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2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허 영·박지원·서영교

박상혁 • 권칠승 • 박성준

임호선 · 소병훈 · 한정애

안도걸 • 이연희 • 홍기원

김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, 금강, 낙동강, 영산강,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고 있음.

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'유역관리기금'의 재원으로서 '취수부담금'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, 부담금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97호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9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7.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취수부담금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